

이 보도자료는 **2018. 9. 20.(목)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이수권
전화 031-212-1002

보도자료
2018. 9. 20.(목)

자료문의 : 강력부
전화번호 : 031-212-8887
주책임자 : 부장검사 박영빈

OLED 패널 공정장비 설계도면 해외 유출 사건 수사 결과

- 수원지방검찰청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 보호센터가 최초 입수한 Flexible OLED 패널 공정장비 설계도면 유출 첩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공조하여 수사한 결과,
- 최근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한 국내 중소기업 X회사의 前 설계팀장 A○○와 설계팀원 B○○가 중국 Y회사로 이직하여 Y회사 한국지사를 설립하면서, X회사의 영업비밀인 OLED 패널 공정장비의 설계도면 전체 파일 등을 무단 반출하고, X회사의 前 설계팀원인 C○○까지 가담하여 반출한 도면을 이용해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등으로 A○○는 구속 기소, B○○, C○○은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보강된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전문화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보호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임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

- A○○(X회사 前 설계팀장)은 2017. 7. 31.경 중국 Y회사로 이직하면서, X회사의 주요자산인 OLED 패널 M공정장비 설계도면 전체 파일 등을 무단 반출 [업무상배임]
 - A○○, B○○(X회사 前 설계팀원)은 공모하여, 2017. 8. ~ 10.경 X회사에 재직 중인 B○○가 중국 Y회사로 이직한 A○○에게 M공정장비의 기술 설명서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 [업무상배임]
 - B○○(X회사 前 설계팀원)은 2017. 10. 24.경 중국 Y회사로 이직하면서, X회사의 주요자산인 OLED 패널 N공정장비 설계도면 전체 파일 등을 무단 반출 [업무상배임]
 - A○○, B○○, C○○(X회사 前 설계팀원)은 공모하여, 2017. 11. ~ 2018. 6.경 중국 Y회사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X회사의 고객사인 중국 Z회사에 납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반출한 X회사의 영업비밀인 M공정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수정하여 중국에 있는 Y회사 서버에 업로드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 M, N공정장비 설계도면에 반영된 Flexible OLED 패널 공정 기술은 최근에서야 상용화된 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위반죄로는 의율하지 않음

2

주요 수사 경과

- '18. 6. 22. 대검찰청 첩보(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접수
- '18. 7. ~ 8.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관련자료 분석
- '18. 9. 7. X회사 前설계팀장 A○○ 구속
- '18. 9. 20. A○○ 구속기소, X회사 前설계팀원 B○○, C○○ 각 불구속기소

3 수사 결과

1. 국내 중소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실태 확인

- X회사는 최근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하여 매출이 급성장한 '중소기업'이고, 전세계에서 Flexible OLED 패널 공정장비를 대량생산하는 기업은 X회사 포함 국내 기업들뿐임
- 중국 Y회사는 Flexible OLED 패널 공정장비 제작 기술·경험이 없는 후발주자로서, 시장진입 위해 X회사의 설계팀장 A○○ 등을 영입함
- A○○는 아직 전 중국에 있는 Y회사 본사를 방문, X회사의 장비들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M공정장비의 향후 제작 계획을 수립한 다음, 아직 시 X회사의 M공정장비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한 후, 그 도면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중국 Y회사 본사에 전송, Y회사는 전송받은 설계도면으로 X회사 장비와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었음
- B○○는 X회사의 N공정장비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X회사 설계팀 서버에 저장된 다른 장비들의 설계도면을 다수 내려받아 무단반출함
- A○○ 등이 M공정장비에 이어 N공정장비도 제작 계획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X회사의 주요 장비 대부분을 제작할 계획이었음이 드러남

2. 국내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 확인

- 국내 중소기업은 열악한 자금 상황 등으로 인해 핵심 직원에 대한 처우와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 등이 취약함
 - 중국 Y회사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X회사 연봉의 2배 이상의 연봉과 한국지사장 자리를 미끼로 A○○를 영입
 - A○○는 X회사의 취약한 영업비밀 관리 상황을 이용하여 M공정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무단 반출

- 중국 Y회사는 X회사 설계도면을 도용함으로써 절약한 시간·비용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 부품비용 등을 바탕으로, X회사가 수년간 수백억 원을 들여 제작한 M공정장비를 수개월 만에 제작하여 다른 아닌 X회사의 고객사인 중국 Z회사에 납품할 계획이었음
-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은 핵심 인력·기술 유출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기술 유출 시에는 고객사를 모두 잃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확인

3. 관계기관 공조로 추가적인 기술 유출 차단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함 ■

[별첨]

피고인별 처분 내용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결과
1	A○○(45세) X회사 前설계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7. 31.경 중국 Y회사로 이직하면서, X회사의 주요자산인 OLED 패널 M공정장비 설계도면 전체 파일 등을 무단 반출 [업무상배임] - B○○와 공모하여, 2017. 8. ~ 10.경 X회사에 재직 중인 B○○로부터 M공정장비의 기술설명서 등 23개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해줌 [업무상배임] - B○○, C○○와 공모하여, 2017. 11. ~ 2018. 6.경 위와 같이 반출한 X회사의 영업비밀인 M공정장비 설계도면 743개 파일을 수정하여 중국에 있는 Y회사 서버에 업로드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구속기소 (18.9.20.)
2	B○○(35세) X회사 前설계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와 공모하여, 2017. 8. ~ 10.경 중국 Y회사로 이직한 A○○에게 M공정장비의 기술설명서 등 23개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해줌 [업무상배임] - 2017. 10. 24.경 중국 Y회사로 이직하면서, X회사의 주요자산인 OLED 패널 N공정장비 설계도면 전체 파일 등을 무단 반출 [업무상배임] - A○○, C○○와 공모하여, 2017. 11. ~ 2018. 6.경 위와 같이 반출한 X회사의 영업비밀인 M공정장비 설계도면 743개 파일을 수정하여 중국에 있는 Y회사 서버에 업로드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불구속기소 (18.9.20.)
3	C○○(37세) X회사 前설계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B○○와 공모하여, 2017. 11. ~ 2018. 6.경 위와 같이 반출한 X회사의 영업비밀인 M공정장비 설계도면 743개 파일을 수정하여 중국에 있는 Y회사 서버에 업로드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불구속기소 (18.9.20.)